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 3. 13.(금) 10:00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0년 3월 4일

○ 회부일자: 2020년 3월 5일

3. 제정이유

○ 충청북도 내 통학이 취약한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해소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통학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 대상(안 제5조)

○ 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0조)

○ 통학지원 차량 운영 실태조사(안 제11조)

○ 통학차량 안전교육(안 제12조)

○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안 제13조)

○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안 제15조)

## 5. 검토의견

### 가.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통학이 취약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유·초·중학교 원거리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등·하교 통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매년 통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통학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학 지원 정책 시행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안 제15조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통학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통학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통학 지원과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학 지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통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 안 제14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자치 단체와 관련 기관 등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강조하였음.

## 나.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통학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통학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타당한 제정이라 판단됨.